



# 알기 쉬운 생활법

## 지적재산권의 종류

### [1] 지적재산권이란?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 [2]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지적재산권은 흔히들 지적창조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반면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추후 창작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창작자의 사익과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 저작권

### [1]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등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그 번역물,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각각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을 보면, 소설, 시, 논문, 강연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무용 등 연극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공예,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 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 사진저



작물, 영상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 [2]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수준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과 같이 어떤 등록절차없이 저작한 때로부터 바로 저작권을 가집니다. 물론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저작권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저작권은 발생한 것이기에 등록으로 인해 새로이 저작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등으로 침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는 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침해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 특허권

### [1] 특허란?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대상인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최면술, 암기법 등이나 논리법칙을 이용한 암호작성방법 등은 발명이 될 수 없고, 기술적 사상 그 자체가 아닌 사상의 창작물은 특허대상인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중 고도한 것이어야 하므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 [2] 특허요건

특허의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 필요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발명품이 같이 출원되었을 경우 그 권리관계에 대하여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법외에는 거의 다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특허법도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발명하였더라도 출원을 늦게 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권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게 되면 소급해서 특허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침해가 있을 경우 침해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